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대표발의: 고 병 준 의원)

의
번
호
25-31

발의연월일 : 2025. 4. .

1. 개정이유

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인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 “미세먼지 취약계층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춰 규정하여 기존 범위보다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 정비 (안 제2조)

3. 관계법령

가.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

나.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5.4.4. ~ 4. 10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미세먼지 취약계층”이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<u>미세먼지 취약계층</u>”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·유아, 어린이, 65세 이상의 어르신, 장애인, 임산부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미세먼지 취약계층</u>”이란 「<u>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/u>」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.</p>

【관 계 법령】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1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정부는 어린이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,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,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3. 6. 11.] [대통령령 제33491호, 2023. 5. 30., 일부개정]

제14조(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9. 24.>

1. 어린이·영유아·노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
2. 옥외 작업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

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12.11. 8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
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: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비용 소요
나. 관련 조문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환경녹지국 맑은환경과 고다현
연락처	02-3153-9274